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6. . . (제 회)	

국 세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 전자송달 신청으로 간주하는 대상 세액에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 이후 완납하지 않아 고지된 세액을 추가하고,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추가된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른 등기우편 비용으로 정하는 한편,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 고충민원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안 제5의2)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나.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안 제6의2)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여 고지된 세액의 경우에도 고지서 송달 전에 자진납부 시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1 -

다.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안 제27의4)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은 매 1월 경과시마다 1만분의 67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은 「우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으로 함.

라.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안 제48의2제2항 신설)

고충민원 정의규정을 현행 제43조의3제3항에서 제48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등은 고충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마.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부분조사 허용 (안 제63조의12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안 제63의16)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를 참관할 수 있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을 삭제하여 참관 범위를 확대함.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는 세액
- 제27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월 1만분의 67의 율을 말한다.
-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요금을 말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으로, “제출한”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결청(”를 “재결청(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인, 고충민원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심사청구”를 “심사청구, 고충민원 신청”으로 한다.

-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결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1. 이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2.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3.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4.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완료된 사항
5. 기타 국제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3조의1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3조의16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제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요청한 세무조사 참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분조사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은 이 영 시행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u>50만원</u> 을 말한다.	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 ----- <u>100만원</u> -----.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1.·2. (생략) <u><신 설></u>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u>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u>

<u><신 설></u>	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는 세액 4. 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u>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하는 세액</u>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생략)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현행 제67조의4 제1항제4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지하는 등기우편요금을 말한다.)
<u><신 설></u>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② (생략)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5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정 또는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 ---. 1.·2. (현행과 같음)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 ----- ----- ----- ----- -- 재결정(고충민원의 경우에 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의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 과 주소 또는 거소 2.·3. (생략) <u><신 설></u>	----- ----- ----- -----. 1. ----- <u>심판청구인, 고충민원 신청</u> ----- ----- ----- ----- 2.·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결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의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충민원을 제기
--	--

